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9.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6. 28. 정부

나. 회부일자 : 2024. 7. 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2차 전체회의(2024. 11. 20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

제43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8. 26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6. 9. 1.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정부안)

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통장·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

며,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,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,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장지원)

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, 행정사무감사, 회의규칙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, 증원 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개정안과 같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, 추가적인 예산 소요액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이·통장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이·통장의 법적 지위를 마련함으로써 이·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, 읍·면·동의 행정 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또한 이·통장에 대한 법률상 운영 근거가 부재함에도, 관계 법률에서는 이·통장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, 민방위대 지휘, 세금납부통지서 교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

행정 및 법체계의 체계성·통일성 확보의 차원에서 이·통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립할 필요성도 있을 것임.

다만, 이·통장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게 되면 현행과 같이 조례·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때,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·통장 운영과 관련된 자율성을 감소시키거나 제도의 운영을 경직시킬 우려도 있으므로,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‘(공공)협약’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야나 목적 등의 제한이 적어 다양한 광역행정수요 및 행정주체 간 협력수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.

다만, 개별 법률상 존재하는 협약 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발전투자협약, 광역시설 설치·관리 협약 등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주체 간 체결하는 협약에 관한 개별 법률 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과 같이 행정주체 간 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협약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협약과 관련된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.

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 사이의 구성비율이 변경되고,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심의·의결과정의 다양성·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정부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하여 위원정수를 4인 증원하고 있는데,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상 유사

성을 고려할 때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정수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이해식위원)
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